

부산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

「부산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3월 24일

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부산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2. 제정이유

- 가.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 취약계층 증가,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등 사회 환경 변화로 응급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등 지자체 역할이 중대되고 있어,
- 나.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와 자동제세동기의 사용,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가. 응급의료지원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응급의료지원 내용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(안 제3조 ~ 제5조)
- 다. 응급장비의 관리 및 교육(안 제7조 및 제8조)
- 라. 자동제세동기의 홍보활동(안 제9조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[참조 : 의회사무국장,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(구포동)], 전화 309-4094, 팩스 309-4099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붙임 : 부산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

부산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“응급의료”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·구조·이송·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.
- 2.“응급처치”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,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.
- 3.“자동제세동기(자동심장충격기),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”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.

제3조(응급의료 지원내용)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.

1. 자동제세동기의 설치
2.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
3. 응급의료 홍보

제4조(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)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설치 의무 대상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고 한다)

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

2. 설치 권장 대상은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
다중이용시설

제5조(설치)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)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 · 관리에 대한 계획(이하 “응급 의료 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

2.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3.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4.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응급의료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응급장비의 관리)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 설에서는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8조(응급처치 교육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

2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
3.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
4.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
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·법인·응급의료관련 단체,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.

제9조(홍보활동)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사용방법,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·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영한 것으로 한다.